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알림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86(2020.1.31.)호와 관련입니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마스크 등 예방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계약추진방안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불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물품 수의계약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에 해당하므로 금액한도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진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나. 계약 사전절차

1)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계약심사 불필요 사항이므로 계약심사 제외

※ 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

2) 일상감사 (감사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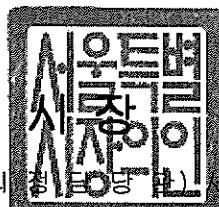
- 사안의 시급성으로 일상감사 한시적 제외

※ 근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제품 구매 관련 일상감사 대상 제외 알림」
(감사담당관-2190호, 2020.1.30.)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1부. 끝.

서울특별



수신자 서관과01-165, 서사01-42,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회당사), 사04-07(방재센터, 소방학교, 119
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 서소1-24(24개소방서), 서성주1-39,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02/04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5384 (2020.2.4.) 접수 보건의료정책과-4285 (2020.2.4.)
우 04515 서울특별시 종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 관련 협조

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중앙-지방의 적극적·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감염증 대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 가능 사항을 안내하오니, 시·도에서는 필요한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시·군·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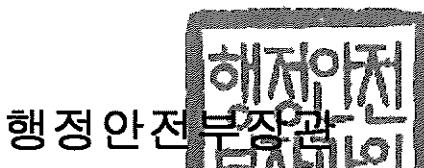
가.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예비비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

※ 활용 예시

- ? 마스크, 손소독제 등 예방용품 재난취약계층 지원
- ? 다중공동이용시설(기차역,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방역소독 실시 등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진단시약, 소독제, 마스크 등 긴급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수의 계약 가능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3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심사 제외 가능. 끝.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 대구광역시장(예산담당관),
인천광역시장(예산담당관), 광주광역시장(예산담당관), 대전광역시장(예산담당관), 울산광역시장
(예산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 경기도지사(예산담당관), 강원도지사(예산과장), 충
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 충청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전라북도지사(예산과장), 전라남도지사(예산
담당관), 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 경상남도지사(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주무관 이창일 행정사무관 장강혁 재정정책과장 전결 01/31
이방무

협조자 행정사무관 최교신

시행 재정정책과-486 (2020.01.31.) 접수 예산담당관-1252 (2020.1.31.)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713 / 전송 044-204-8964 / yahooend1@mail.go.kr / 대시민공개

문서번호	재무과-5087
결재일자	2020. 1.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효진	김대진	김명주	01/31 이병한
협 조	<p>계약심사과장 계약2팀장 계약1팀장 계약전문관</p>		
	代 김형일 이정렬 조현 오선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2020. 1.

재 무 국
(재 무 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정책의제	<p>◆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형 성	<p>◆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p>◆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책수립	<p>◆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협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p>◆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지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책집행	<p>◆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p>◆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p>◆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p>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사항	<p>◆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p> <p>(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p>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계약 추진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마스크 등 구매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신속한 물품 구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등의 수요 급증
- 이에 현행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여 대응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긴급한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개요 (※ 1.31일 9시 기준)

- 국내 발생현황 : (확진환자) 7명, (유증상자) 298명
- 국외 발생현황 : (사망자) 213명, (확진환자) 9,805명

□ 물품 수의계약 방안

- 대상물품 :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제품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에 해당하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제품을 신속 구매하여 긴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금액한도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 추진
- ※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30조 제6호에 근거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물품 수의계약 추진 근거 공문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유선 협의함 ('20.1.31)

〈법적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계약 사전절차 제외 방안

○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는 원칙적으로 계약심사 대상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계약심사 불필요 사항이므로 대상에서 제외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

-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일상감사 (감사담당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일상감사 대상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제품 구매 관련 사항은 사안의 시급성으로 한시적 제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제품 구매 관련 일상감사 대상 제외 알림」
(감사담당관-2190호, '20.1.30.)

각 기관(부서) 추진사항

사업부서

- 마스크, 손세정제, 열화상카메라 등 부서별 구매수요 발생 시 사전절차 (계약심사, 일상감사) 없이 계약부서로 계약의뢰

계약부서 (사업소 계약부서 포함)

- 사업부서의 계약의뢰 문서 접수 시 지체 없이 계약체결

향후 일정

물품계약 추진방안 배포

: 즉시시행

붙임 : 긴급한 재난복구 관련 규정 1부.

□ 지방계약법령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제조·구매 사업
 - 라. 제3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중 수익시설운영에 해당하는 사업
 - 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